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1231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

담당변호사 신성호,배은서

피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

담당변호사 유치환, 이정신,조태천

변론 종결 2021. 3. 16

판결 선고 2021. 4. 6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. 8. 2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나. 피고는 소외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. 8. 20. 접수 제39683호로마친 근저 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3. 6.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, 모은 같은 날 C은행으로부터 2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B이 2019. 10. 5. 경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. 1. 29. C은행에게 17,781,074원을 대위변제 하였다.

다.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은 원고에게 17,879,048원 및 그 중 17,781,074원에 대하여 2020. 1. 29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, 위 결정은 2020. 3. 3. 확정되었다.

라. B은 2019. 8. 20.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9683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마.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485,260,000원이고, B의 소 극재산으로는 D조합에 대한 대출금 315,077,489원을 비롯하여 합계 490,870,606원의채무가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,을 제1,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이 사건 근저당등기는말소되어야한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2018. 7.과 2018. 10.경 B에게 물품공급을 하고 대금 8,195,000원을 받지못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선의이다.

다.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더욱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의라고 주장하나,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위 악의 추정이 반복될 수 없고,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이 발생한 것은 2018. 10. 경임에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9. 8. 20.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이 상당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, 피고 역시 B의 변제자력을 의심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우

별지